

보 건 복 지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창원시, 함안군, 고성군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외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상남도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전용계좌 현황을 확인한 결과, 창원시 ‘○○○○○아동센터’ 등 3개 시설은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창원시장, 함안군수, 고성군수는

후원금 전용계좌 미사용 등 법령 위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